

[수치한정발명] 선행발명과 특정한 수치한정에만 차이가 있는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후380 판결



## 1. 선행발명과 수치한정에 차이가 있는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 1299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광학재료용 수지의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의 제1항 발명은 폴리티올 화합물과 폴리이소시

아네이트 화합물을 혼합한 '중합성 조성물'의 수분 함유량을 '10~300ppm'으로 수치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발명과 다름.

출원발명 명세서에 '중합성 조성물'이나 '폴리티올 화합물'의 수분 함유량이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렌즈의 맥리(脈理: 광학 유리 등의 내부에 있는 굴절률이 불균일한 부분)나 백탁(白濁: 뿌옇게 흐려짐) 발생 억제와 관련하여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고,

제1항 발명에서 중합성 조성물의 수분 함유량의 수치를 조절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렌즈의 맥리나 백탁 발생 억제 효과는 선행발명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선행발명의 기술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효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선행발명에 의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

첨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후380 판결

변리사23년/변호사 15년, 특허심판소송, 민형사,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